



가정통신문

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융합형 민주시민 육성

2021년 03월 8일 월요일

담당자 교무부장 송 ○ ○

담당전화 070-7842-0619

전북 남원시 낙현길 17-14 / <http://www.seojin.hs.kr> / 063-631-1333(교무실) 063-631-1331(행정실)

2021학년도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관리 안내

학부모님께

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. 신학년도 개학에 따라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한 2021학년도 중등 원격수업 출결·평가·기록·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2021학년도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에 관하여 **2021.03.02.부터 적용될 출결관리**를 안내드립니다. 출결관리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원활한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.

「 2021학년도 등교수업 출결관리 안내」

기본 원칙

- ❖ 교육부훈령 제365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,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
- ※ 코로나19로 인해 **학교·학년·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,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**(학생 등교 전 등교 중지 시 당일부터, 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)하고,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
- ※ 기타 미등교 등으로 장기결석 시,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'코로나19로 미등교(00일)'로 기재(출석인정결석 처리 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)

1. (등교중지 대상 학생) 특정 학생이 「학교보건법」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'출석인정결석' 처리
- ※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, 해당일은 '출석인정 조퇴' 처리
 - ※ 등교중지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

【등교중지 대상 학생】

대상	등교 중지 기간	출결증빙 자료
확진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원치료통지서* 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을 시행규칙 [별지 제 22호 서식]
격리 통지 받은 학생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격리통지서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*	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거인의 격리통지서
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	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문자 통지 사본 등)
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(임상 증상 발현 학생) ※ 임상증상 발현 시 '유·초·중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제3판)'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·문의(해당 지침 5, 9, 40페이지 참고)	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(호전) 시까지 ※ 참고사항 ▶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(방역지침 40쪽 참고)	[코로나19 검사 결과 '음성'인 경우] •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(예: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(발급 가능 시), 문자 통지 사본 등) [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] •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, 학부모의견서 등 ※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발급 가능 시 권장) ※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(예: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, 진료확인서,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) ◦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 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

「2021학년도 원격수업 출결관리 안내」

1. 출결확인

-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, 담임교사가 미수강 학생 수강 독려 및 대체학습 안내
-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당일(해당시간)이 원칙이며, 접속불양 등으로 대체 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.
- 수업유형에 따라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수업일로부터 3일 이내로 출석확인이 가능(학교장 임의변경 불가)

※대체학습기간(3일) 이내 미이행시 결과처리 됨

2. 대체학습 출결처리 범위

-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*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에 제공한 대체학습 이행 결과**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

*장애학생, 지리적·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

** (예시)서면학습자료 및 과제 제공, 등교 시 학부모 학습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

★기한내(3일내)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, 교외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한 해당 수업의 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

3. 등교중지대상학생 학습권 보장

- 등교중지대상학생*은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,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으로 인정
- ※ 등교중지대상학생이 수업 미수강시에는 출석인정결과(공결)처리 됨.
- *확진받은 학생, 격리 통지 받은 학생,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등

4. 시행일자

2021.03.02.(화)

※ 위 안내된 2021학년도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출결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임선생님과 교과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.

2021. 03. 08.

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

